

103.6499	101	1층	4	174,956,000	17,495,600	12,400,000	12,400,000	132,660,400
		2층	4	181,540,000	18,154,000	14,400,000	14,400,000	134,586,000
108.9384	102	기준층	32	184,362,000	18,436,200	15,300,000	15,300,000	135,325,800
		1층	7	183,883,000	18,388,300	15,100,000	15,100,000	135,294,700
	101	2층	12	190,803,000	19,080,300	17,200,000	17,200,000	137,322,700
		기준층	96	193,769,000	19,376,900	18,100,000	18,100,000	138,192,100

주) 1. 위에 표시된 아파트는 세대별 용자금액(각 8,000 만원)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이 지원되어 있으며, 동 금액은

준공이후 분양입주자에게 잔금으로 용자 전환 될 예정임.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심사에 의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공히 지하층의 설치 의무화된 법정최소면적을 초과하 는 지하주차장면적이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공유 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6 조에 의거 납부하여야하며, 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 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 공용면적중 주거공용면적은 복도, 벽체공용면적, ELEV 계단실 등 공용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경로당, 전기기계실, 주민활용시설, 경비실등 별도 의 면적과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1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을 산정하였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기타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공히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층별 구분은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저층에서 최상층을 표기한 층수임.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주택형별 공히 세대당 8,000 만원)이 대출되어 잔금 일 부로 대체될 수 있으며 입주일(입주예정일 이후 입주시는 종료일)로부터 대환 전일까지 기간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용자이자 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종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시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2007.9.1 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소유여부,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 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에 청약자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가점항목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참조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3 자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 조 6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05.23)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로서 만 20 세 미만의 직계자녀 3 명이상을 둔 자에게 건설량의 3%범위(5 세대) 내에서 특별 공급함.

* 청약예금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함. 단, 재당첨금지 적용자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 3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 호적등본을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함.

· 신청대상 : 아래 『3 자녀 특별공급시 배정기준』 표상 요건을 갖춘 자 중 특별공급을 희망하는 자

· 3 자녀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함.

· 신청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접수장소에 비치), 배점표(분양사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 통 (본인의 주민등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 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 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①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만 60 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장애인등록증사본 1 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무주택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 가능)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함.

2.3 자녀 특별공급시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배 점 표 (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평점요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 수	
계	100			
자녀수(1)	미성년 자녀 40	4 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 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세대주 나이가 35 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15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6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름(60 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시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분다
		1년 미만	5	
(1),(2):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으로 확인, (3): 건설교통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3 자녀 특별공급시 동점자 처리 :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적용함

3. 특별공급 세대(3 자녀특별공급)

주 택 형	103.6499㎡	108.9384㎡	합 계
특별공급 세대수	2	3	5

-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사 분양사무실 방문 신청
- 접수일시 및 장소 : 2008. 05. 29(목) (10:00 ~ 12:00) 당사 본사(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참조)
- 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05. 29(목) 14:00 / 당사 본사(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참조)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으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은

무효처리함

-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당첨자 또는 기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본 주택형의 특별

공급신청이 가능함

4.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5.23)현재 전주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 세 이상인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전주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저축·예금을 가입한 후 전주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

주택건설 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면적별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 인 1 건만 신청가능하며, 1 인 2 건 이상 청약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모두를 무효 처리함.

- 당첨자 중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 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당첨자 또는 기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본 주택형에 청약이

가능함

5.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청약 관련 예금 및 신청 자격	거주 구분	접수 일자	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 간 건 물 매 매 물 주 택	1 순위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 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추첨제 :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 세 미만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 	전 주 시	08.05.30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장소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2you.com - KB 모바일 Mbank, kbank, Bankon 접수시간 08:30-18:00 3 순위 접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 당사 본사 및 건본주택 일시: 2008.06.10 (화) 14:00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통지는 하지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에 속한 분

※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 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p>대상자로 자동 전환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되고 200 만원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전용면적 85 ㎡이하 가입자에 한함)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 회 이상 납입한 분 · 1 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 순위자로서 2 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은 1 순위 청약불가. · 단, 2 순위로는 청약가능(※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본 · 지점 · 접수시간 09:30-16:30 	
2 순위	85 ㎡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08.06.02 (월)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되고 200 만원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전용면적 85 ㎡이하 가입자에 한함)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 형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 회 이상 납입한 분 · 1 순위자 중 상기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 순위	85 ㎡이하	· 1 순위 및 2 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08.06.03	(화)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 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가능 함(창구 접수시간 : 09:30-16:30)

▣ 청약 가점제 적용안내

- 2007. 9 .1 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1,2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 75%(소수점이하 절상), 추첨방식 25%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 점). 부양 가족수(35 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 점) 등 총점 84 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1)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 기간	32	1년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이상~3년 미만	6	10년이상~11년 미만	22
		3년이상~4년 미만	8	11년이상~12년 미만	24
		4년이상~5년 미만	10	12년이상~13년 미만	26
		5년이상~6년 미만	12	13년이상~14년 미만	28
		6년이상~7년 미만	14	14년이상~15년 미만	30
		7년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17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이상~11년 미만	12

가입기간	2년이상~3년미만	4	11년이상~12년미만	13
	3년이상~4년미만	5	12년이상~13년미만	14
	4년이상~5년미만	6	13년이상~14년미만	15
	5년이상~6년미만	7	14년이상~15년미만	16
	6년이상~7년미만	8	15년 이상	17
	7년이상~8년미만	9		
계	84	-		

2) 가정항목별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 조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 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 호 또는 1 세대만을 10 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 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1 조의 2 또는 제 12 조에 따라 60 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6 조 또는 제 17 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 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 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 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 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 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시 자동 부여함

3)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점수	판단방법
구분	기준		
①	60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 호 또는 2 세대인 경우	2 호 또는 2 세대	-5
		3 호 또는 3 세대	-10
		:	:
-세대원 중 만 60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 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 점씩 감점됨 (예 : 2 주택 소유시에 5 점감점)			
②	2 호 또는 2 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 2 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 호 또는 2 세대	-10
		3 호 또는 3 세대	-15
		:	:
-2 주택 이상의 소유에 속한 자가 청약 2 순위로 신청 할 경우 ⇒ 각각의 주택마다 5 점씩 감점됨 (예 : 2 주택 소유시에 10 점 감점)			

* 60 세 이상 직계존속의 세대원이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정제 청약 2 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 점이나, 주택

소유에 따른 감점은 없음

* 가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정제의 점수는 "0 점"으로 산정됨.

4)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 상 등기접수일(미 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7.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4 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8.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 후 20 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85 ㎡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주택 소유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또는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 1호 가목 2)]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종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장기간보유특례)

①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소형·저가주택을 10년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②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으로써 해당 주택의 처분일에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6 조 또는 제 17 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 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 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경과 기간 및 요건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1)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

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2) '94.8.15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 1 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 ㎡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 1 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1)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2)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신청 접수방법

• 특별공급(3 자녀 이상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분양사무실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일반공급

- 공통 :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전주시 거주자에 대하여 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2 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가정제 청약접수를 원칙[입주자선정방법(가정제, 추첨제) 선택 불가하며 가정제로 청약접수함]으로 하며, 가정제 입주자선

정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단, 1 순위자에 한해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 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접수함

- 3 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인터넷/KB 모바일 청약신청 서비스안내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KB 모바일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국민은행(구, 주택은행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제 1.2 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분 -제 3 순위 : 국민은행 뱅킹계좌에 3 순위 청약 신청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단, 국민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 결제원

분양관 →

홈페이지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 청약	(www.ap2you.com)접속
KB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KTF,LGT : KB 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 공급신청시 구비사항(창구 청약자에 한함)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 (1,2 순위: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 순위:농협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통장 (1,2 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2 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 증표: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호적등본 등) 추가 제출
제 3 자 대리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 통(용도: 주택공급신청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상기 제증명 서류중 주민등록등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신청일 기준 3 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3 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전 주 택 형	납 부 방 법
청약신청금	100 만원		창구 청약시 가능한 한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전주시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 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 순위 청약 신청금 환불

환 불 기 간	환 불 장 소	구 비 서 류	
당청자발표 익영업일 (2008.06.11 이후) 평일 09:30-16:30 *토/일/공휴일은 제외	청약접수한 농협 본/지점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청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증 - 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제 3 자 대리환불시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외에 추가 구비사항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 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생략) - 제 3 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제 3 순위 신청자의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제 3 순위 신청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농협 본.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농협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일 의 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등.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분양사무실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 특별공급대상자의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2 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 ·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 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단, 1 순위자중 1 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 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 순위 가정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정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본 아파트에 해당함)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정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p>·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 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물량 등을 공개한 후,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호수를 배정함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p> <p>·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분양사무실에 별도 공고함</p>
--	---

☐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므로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당첨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 민 은 행	금 융 결 제 원
인터넷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부동산→분양관→사이버청약지정→당첨확인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청약센터→당첨자조회
	이용기간	· 2008.06.10 ~ 2008.06.19 (10일간)	
전 화 (ARS)	이용방법	· 먼저 이용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 자리를 연속하여 누르세요.	
	전화번호	☎1588-9999(서비스코드:701)	☎1369(서비스코드:5#)
	이용기간 및 시간	· 2008.06.10 ~ 2008.06.19 (10일간)	
KB 모바일	이용방법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

PIN 입력 ⇒ 당첨확인

휴대폰	이용기간	· KTF, LGT : KB बैंक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 2008.06.10 ~ 2008.06.19 (10일간)	-
문자서비스	대상	·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분 중 당첨자	-
		· 2007.06.10 (08:3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당첨자명단은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의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1. 계약기간 (정당 당첨자) : 2008. 06. 16(월) ~ 2008. 06. 18(수) (3일간, 시간 : 09:30 ~ 16:30)

2. 장 소 : 당사 본사(주소, 전화번호 참조)

3. 기 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부적격 소명 관련 서류를 제출치 못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음.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제한등이 적용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구 분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농협	계약금	503 - 01 -	(유) 옥	· 분양대금 전담 수납계좌로 타행송금은 불가하며 해당은행 본/지점에서만

중도금 잔금	375010	성	입금가능 함(입금 시 비교란에 호수 성명 필히 기재요망)
-----------	--------	---	---------------------------------

· 납부방법 : 지정된 분양금 납부일에 농협 본, 지점에서 무통장 입금(타행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단, 인터넷, 모바일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금(가능한 한 전주시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 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동의서 첨부용) 각 1통씩 2통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역, 가정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 자하는 자에 한함)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배우자 직계존속의 호적등본 1통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제 3 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 3 자로 간주하며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 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되어있는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 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하시기 바람 (외국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 순위 당첨자중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 주택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1,2,3 순위 당첨자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된 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해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 금액이 없음)

- 아파트의 배치, 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7 조(주택의공급계약)를 적용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입주예정일 : 2008 년 10 월말 예정(공정에 따라 입주예정일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개별 통지함)

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어질 경우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 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주민활용시설

▣ 입주예정자에 대한 용자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분양사무실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용자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불가자는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미납시 연체료 가산됨)
- 일선한 금융기관의 입주금(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일 전일까지 당사에서 부담하며, 입주지정일 이후 납부할 이자 및 원금은 계약자 부담임.

▣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 예정일

- 건설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입주자 사전점검일자는 추후 통보함)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품 및 위생기구공사 등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회 사 명	감리금액(원)	비 고
건 축 감 리	(주)하나종합건축사사무소	275,304,7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전기,통신 감리	(주)이린	45,000,000 원	
소 방 감 리	(주)대화엔지니어링	20,000,000 원	

▣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주택공급신청서상에 청약자가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신청자가 일반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음

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종전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단, 접수 당일 접수시간 내에 한하여 취소 가능)

- 입주자로 선정(3 순위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할 시에는 해당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됨.

- 하자 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 59 조에 따라 적용됨.

- 본 아파트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 본 아파트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분양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 20 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본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동 시 공급가격에 의해 정산 처리함.

(단,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 하지 않기로 함)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카타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상의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카타로그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조감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제작한 것으로 색채 및 세부사항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되거나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사무실 및 현장을 방문 하시어 직접 확인바라며,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세부 식재 계획 및 외부색채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주택형 내 설치된 세대내 가구소품,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단지조경 및 세부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공급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샤시,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홍보 카다로그에 표기된 각종 관내시설(학교,관청,도로,철도,공원,상하수도,기타 혐오시설 포함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신설,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지모형 및 조감도와는 일부 다르게 조정 및 시설물(주차장환기구, 옹벽구조물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미관상 하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입주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며, 현장 미확인으로 계약체결 후 단지 인근현황에 대해 당사에 일체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당사는 단지 인근현황에 대해 일체의 책임이 없음.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 면적이 차후 면적정산으로 인하여 소수점이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변동에 대한 차후 정산금액은 없음.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아파트 및 상가의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질 경우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 각 세대는 하자방지 및 보수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관리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업무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처리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

· 확장관련 법규 내에서 당사가 시공한 공사를 입주자 임의적으로 변경, 파손 및 철거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가 감수하여야 함.

· 향후 주변 고층건물 등의 건설 및 주변시설(학교, 가스충전소, 전신주, 아파트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소음발생, 교회, 절 등), 아파트 배치, 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공급받는자는 계약체결 전 사업지(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급받는자는 계약체결 후 본 항에 명시된 사유로 인해 발생된 공급받는자의 손해 및 공급계약체결자의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을 공급하는자에게 물을 수 없다.

▣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분양보증약관

보증서 번호	보증 금액	보증 기간
제 05612008-101-0001500 호	₩ 8,243,420,900 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

1.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 106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에 따라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함.

2.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 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충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충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 6 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 7 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 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 8 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 1 항 제 4 호 내지
제 8 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 1 항 제 8 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 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비

· 건축법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15 호, 제 46 조 제 4 항·제 5 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 범위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2005.12.02 개정·시행)

구 분		위 치	확장 금액 (원)	비 고
103.6499㎡	1층~10층	거실/주방, 침실 2, 침실 3	무료제공	
108.9384㎡	1층~10층	거실/주방, 드레스룸, 침실 2	무료제공	

※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회 사 명	비 고
사업주체(시행사)	(유)옥 성	전라북도 2002-18
시공사	(유)옥성건설	

▣ 당사 본사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31-1 (☎ 063-280-7300)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당사 분양사무실 및 본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